全景社会公对

제391회 정례회 '21. 6. 10.(목)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의영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O 발의일자 : 2021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3. 제안사유

- 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당사자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 기 위함.
- 나. 법령 개정, 행정기구 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함.

4.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 (현행)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 (개정)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 3조)
 - 당연직 위원에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 포함
 - 위촉직 위원에 남·여 청소년 포함
- 다.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라. 관계공무원,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안 제9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회)

가. 제출배경

○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청소년 기본법

-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 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u>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u> 조례로 정한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충청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령 개정, 행정기구 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 제명을 현행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로 개정함.
- '지방'은 중앙부처에서의 관점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일컫는 용어로, 조례 제명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함. 또한 '구성 및 운영'을 삭제해도 의미 전달에 있어 문제가 없으므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일반국민이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어표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에 따라 사용된 약어표기를 제2조로 옮기고, 의미의 중복사용인 "~제11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1조에 따라"로 개정함.
- O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원회 규정 방식 상 기능, 구성, 위원임기, 위원 장의 직무 순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 현행 제2조를 제3조로, 현행 제3조를 제2조로 바꾸고,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위원회는 주요 정책의 심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것을 "심의 또는 자문"으로 변경함.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u>지방자치단</u> 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 도지사 ~ 소속으로 <u>지방청소년육</u> 성위원회를 둔다.

- 위원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현행 "2인"에서 "1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직책을 현 기구명칭 및 업무 담당 부서에 맞춰 변경하 였으며, 여성가족정책관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을 추가함.
- 위원회 위원수가 15명 인 점을 감안할 때, 부위원장은 1명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연직 위원에 도 청소년 정책의 담당부서장인 여성 가족정책관과 도 청소년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충청북도청소년종 합진흥원장을 추가함으로 위원회가 역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위촉직 위원에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남·여 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을 성별 비율에 맞춰 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능동적인 시민으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
 - ※ 위촉직 위원에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한 것은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전남, 경남, 제주에 이어 충북이 8번째임.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함.

혅행

-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u>1인 및 부위원장</u> <u>2인을 포함한 15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교육 국장, 충청북도지방경찰청방 법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단체장,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 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자 중에서 도지사 가 위촉한다.

개정안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u>1명 및</u>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 청학교자치과장, 충청북도경찰청여성청 소년과장,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북도청 소년종합진홍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 가 위촉한다.
- 1.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 리법인 · 민간단체 · 청소년단체 · 교사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 2.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 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 3.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남·여 청소년
-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에서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함.
- 이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u>같은</u>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회의), 제7조(간사), 제8조(회의록), 제9조(의견청취 등), 제10조(수당 등)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일부 문구를 개정하였음.
- 또한, 현행 조례에 있던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함.
- 이는 소규모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그 필요성이 약하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별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한 곳도 없음).
- 특히 충북의 경우 타 시·도와는 달리, 청소년 복지·인권,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 성문화 지원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내의 운영위원회가 도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실무위원회 구성은 업무의 중복인 점을 고려해 별도 실무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제8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 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u>삭 제</u>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조정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자문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충청북도 청소년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 문제가 없으며,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친 바 절차적으로도 타당함.
- 특히, 선거연령 하향(만 18세)과 함께 청소년의 사회참여에 대해서도 체험 등 예비적 단계의 활동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와 의무로 다시 정의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존재'에서 '능동적인 시민'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참여방법의 다양화, 참여수준의 상향 등이 모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 당사자들의 충청북도 청소년정책 수립및 운영 과정에의 참여를 조례로 보장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청소년 위원의 위촉 방식에 있어 충북도 내 청소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